자주하는 질문(FAQ)

신청자격 및 컨소시엄 구성

1. 공동연구과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과제책임자는 제주 JOY 공유대학 참여대학(제주대학교, 제주한라대학교, 제주관광대학교) 소속 전임 교원이어야 합니다.

○ 과제별 지정된 과제책임자 소속대학의 전임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, 과제책임자 1인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.

신청자격 및 컨소시엄 구성

2. 공동연구과제의 컨소시엄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과제책임자 소속대학을 포함하여 JOY 공유대학 참여대학 중 2개 대학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

○ 또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참여기업 1개 이상이 필수이며, 연구소·연구기관·지역혁신기관 등은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격 및 컨소시엄 구성

3. 참여기업 및 기관의 소재지에 제한이 있나요?

○ 참여기업 및 기관의 소재지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.

○ 다만 과제별 연구목표 및 수행내용에 부합하는 공동연구 역할과 협력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.

사업비 집행 관련

4. 과제별 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

○ 과제별 지원 사업비는 제안요구서(RFP)에 제시된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, 신청 시 해당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.

○ 최종 지원금액은 평가 및 심의 결과, 연차별 교부 예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사업비 집행 관련

5. 사업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하나요?

○ 「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」 및 관련 적용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합니다.

○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항목별 예산, 사용용도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
사업비 집행 관련

6. 참여기업에 사업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나요?

○ 본 공동연구과제의 사업비는 과제책임자 소속대학에 지원하며,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은 불가합니다.

○ 참여기업은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구성기관으로서 과제별 연구내용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며,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관련 지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·집행해야 합니다.

사업비 집행 관련

7. 프로젝트 Lab 및 현장실습·인턴십 운영계획도 포함해야 하나요?

○ 본 공동연구과제는 연구와 연계한 학생 연구참여 및 산업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.

○ 프로젝트 Lab 및 현장실습·인턴십 운영이 요구되는 과제는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과제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.

○ 프로그램별 운영내용, 참여대학 및 기업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
신청서 및 제출서류

8.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?

○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,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.

○ 과제계획서와 제출서류를 각 1부(원본 1부 포함) 제출하고, 계획서 본문과 첨부서류 등의 한글파일을 수록한 USB 1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서 및 제출서류

9. 기자재 구입 계획서는 모든 과제가 제출해야 하나요?

○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시설·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○ 구입 예정 기자재의 활용목적, 필요성 및 중복구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,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연구성과 및 사사표기

10. 과제 수행을 통해 게재한 논문에 사업명 및 과제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나요?

○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된 논문 등 과제성과물에는 사업단에서 정하는 사사표기를 적용해야 합니다.

○ 구체적인 사사표기 문구 및 표기방법은 사업단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
연구성과 및 사사표기

11. 하나의 논문에 다른 연구과제 또는 지원사업의 사사를 함께 표기할 수 있나요?

○ 공동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논문에 타 연구과제 또는 지원사업의 사사를 함께 표기하는 경우, 해당 사업별 사사표기 기준과 연구성과 인정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○ 공동사사에 따른 연구성과 인정범위 및 세부 적용기준은 추후 사업단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
연구성과 및 사사표기

12. 공동연구과제 신청 시 3책 5공 기준이 적용되나요?

○ 본 공동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인 3책 5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